

IMO 제5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참석결과 보고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제5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57th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기간/장소 : 2008. 3. 31~4. 4(5일) / 영국 런던, Royal Horticultural Halls
- 참 석 자 : 안전기획팀 선임검사원 장용훈

II. 의제목차

- 의제1. 의제 채택
- 의제2. 평형수내 유기생물체
- 의제3. 선박재활용
- 의제4.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
- 의제5. MARPOL 73/78 및 관련규정의 해석과 개정
- 의제6. OPRC 협약, OPRC-HNS 의정서 및 관련 협약 결의서 이행
- 의제7. 특별해역과 특별 민감해역의 식별 및 보호
- 의제8. 불충분한 수용시설
- 의제9. 전문위원회 보고서
- 의제10. IMO 타기구 결정사항
- 의제11. 협약 이행상태
- 의제12.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 의제13. MARPOL 73/78 및 관련 규정의 이행 증진
- 의제14. UNCED와 WSSD 후속조치
- 의제15. 기술협력프로그램
- 의제16. 인적요소의 역할
- 의제17. 공식안전성평가(FSA)

- 의제18. 위원회 및 부속기구 작업계획서
- 의제19. 위원회 지침서의 적용
- 의제20. 기타사항
- 의제21. 위원회 보고서 검토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1	의제 채택
------	-------

- 의제는 Provisional Agenda(MEPC 57/1/1) 대로의 없이 채택하고, 아래와 같이 작업반을 구성함
 - W.G 1 : 선박재활용 검토(의장 : Mr. J. Koefoed 노르웨이)
 - W.G 2 : MARPOL 부속서 6 & NOx 기술코드 (의장 : Mr. B. Wood-Thomas, 미국)
 - W.G 3 : GHG 관련(의장 : Mr. B. Okamura, 일본)
 - D.G 1 : 선박평형수(의장 : Mr. B. Elliot, 영국)
 - D.G 2 : PSSA & 특별지역(의장 : Mr. Annaliese Caston, 호주)

의제 2	평형수내 유기생물체
------	------------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활성물질의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 관련(관련 문서 : MEPC 57/2, MEPC 57/2/1, MEPC 57/2/2, MEPC 57/2/3, MEPC 57/2/4, MEPC 57/2/5, MEPC 57/2/6, MEPC 57/2/7, MEPC 57/2/8, MEPC 57/2/9, MEPC 57/2/10, MEPC 56/2/3)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GESAMP-BWWG로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의 초기승인 및 최종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심의 방법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는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승인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GESAMP-BWWG은 다음과 같이 활성물질 기본승인, 최종승인을 권고
 - 대한민국의 Electro-Clean은 최종승인 불허
 - 일본의 Clean Ballast는 기본승인 허락
 - 독일의 Clear Ballast는 최종승인 불허
 - 남아공의 Resource Ballast Technology System은 기본승인 허락
 - 대한민국의 GloEn-Patrol은 기본승인 허락
 - 독일의 PERACLEAN은 최종승인 허락
 - 노르웨이의 OceanSaver는 기본승인 허락
- 위원회는 GESAMP-BWWG의 권고 내용대로 각각 승인 및 승인 불가 결정
 - 아국은 Electro-Clean의 최종승인 불허와 관련하여, GESAMP-BWWG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고, 충실한 추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승인 신청서류를 다시 제출하였다고 발언
 - 아국은 GloEn-Patrol의 기본승인 허락과 관련하여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GESAMP-BWWG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발언
 - ※ 환경단체인 FOEI에서는 아국의 발언에 대하여 경의를 표함
- 네덜란드의 Greenship과 일본의 TG 처리장치 기본승인 신청서는 MEPC 58차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함

□ 활성물질승인 지침서(G9) 개정 관련

(관련문서 : MEPC 57/2/14, BLG 12/5)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활성물질 승인 지침서(G9)의 개정안 작성을 위해, BLG 12에서 논의된 내용을 금번 구성된 검토반에서 완성하여, 완성된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검토반에서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활성물질의 정의를 다시 하였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인체노출시나리오를 추가하였으며, 기본승인과 최종승인 과정을 분명하게 기술하여 개정안이 채택됨
- 한편,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활성물질 승인 지침서(G9)를 2년간 개정않기로 결정함

□ 형식승인 지침서(G8) 개정 및 활성물질 승인 방법론 작성 (관련문서 : MEPC 57/2/11, MEPC 57/2/12, MEPC 57/2/14, BLG 12/5/3, BLG 12/5/7, BLG 12/5/9, BLG 12/5/10)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BLG 12에서 논의를 시작한 형식승인 지침서(G8) 개정, 활성물질 승인 지침서(G9)와의 관계 정립, 활성물질 승인 심사 방법론에 대한 의제를 금번 구성된 검토반에서 논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향후 검토 계획을 세우고 각국의 관련 의제 제출을 요청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사무국은 가장 새로운 버전의 활성물질 심사 방법론에 대한 자료를 IMO 회람을 통해 전달하도록 지시
- 활성물질 기본승인을 다른 개발사의 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BLG 13차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선박평형수 유사 처리장치 승인 절차에 대한 검토의제를 MEPC 58차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형식승인 지침서(G8) 개정 관련, 추가의 심도 깊은 논의와 그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각국에 이에 대한 자료 의제 제출을 요청하고 MEPC 58차 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GESAMP로 하여금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처리 장치의 인간 노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 계획을 개발하여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의제 3 선박재활용(WG 2)

□ **비당사국 선박의 처리**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협약 초안에 대한 의견과 비당사국의 재활용 설비 문제에 대한 제안
- MEPC56차에서 인도는 협약적용선박을 비당사국에서 재활용 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미국은 쌍방간 계약을 허락하는 제안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작업반은 규정17.1의 문구 중 “협약 범위 내의 선박”을 좀더 구체적인 용어인 “Art.3.4에 준하여 처리되는 선박(비당사국 선박) 또는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작업반은 규정18, Art.6/10, 부속서 5의 내용을 동일 수정하는데 동의하였음
- Art.3.4 : 협약 비당사국 선박은 당사국 선박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협약 요건을 적용함
- 프랑스와 벨기에는 협약 비당사국 선박이 더 이상 유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 지침서에 언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작업반에서는 외교회의의 결의안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
- 작업반은 협약상에 당사국대 당사국 계약사항만 유지하기로 하고, 비당사국에 대한 사항인 Art.7.2, 12.1bis, 규정 7bis, 8.2를 삭제하기로 함
- 비당사국 사항은 통신작업반에서 검토하여 58차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제3자 감사에 관한 사항**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협약에 대한 근본적인 허점을 보완하고 협약의 이행을 위해 3자 감사 도입을 제안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작업반은 제3자 감사와 관련된 조항인 초안 13.bis를 삭제하고 그 대신 이 규정 또는 결의안을 통해 자발적 이행 장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Reg.16bis를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통신작업반에서 문구를 개발하기로 함

□ **선박재활용 위해물질 3가지에 관한 사항**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노르웨이는 선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3가지의 위해물질을 협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
 - Perfluorooctane and Sulfonates (PFOS) 와 PFOS-Related Substances : 협약 초안의 부록 1에 포함할 것을 제의. 협약 발효이후 부터는 이 물질이 포함된 재료의 신설을 금하는 것을 통제 조치로 제안함
 - Brominated Flame Retardant(HBCDD) : 협약 초안의 부록 2에 포함할 것을 제의
 - Trichlorobenzene(TCB) : 협약 초안의 부록 2에 포함할 것을 제의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3차 중간회기에서도 논의되었던, MEPC 57/3/19 노르웨이의 세가지 위해물질(PFOS, HBCDD, TCB)의 목록상의 추가 등재는, 위해물질 전문가에 의해 결정하기로 결론
- DE55차에서 SOLAS reg.II-1/3-5.2의 수정 합의된 사항으로, 선박에서 석면의 신규 설치는 예외 없이 금지하기로 결정됨. 수정 초안은 MSC 84차에 제출, 85차에서 채택이 되어, 2010년 7월에 발효 예정

- 작업반은 선박의 새로운 장비 설치시 석면에 대한 예외 조항 전부를 삭제함. 만약 MSC에서 이 문제가 채택되지 않으면, 외교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사용하고 있으며 양식을 보다 더 간소화 할 것을 제안

□ 선박재활용관련 증명 및 양식에 관한 사항

(관련문서 : MEPC 57/3/)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선박 재활용 협약의 초안과 관련 검사 및 증명서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IMO의 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에 따라 협약초안의 검사와 인증 부분에서 정기검사(Periodic survey)을 갱신검사(Renewal survey)로 변경하고, 증서의 정기이서(Periodic Endorsement)를 증서의 갱신이서(Renewal Endorsement)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결정함
- 국제 유해물질목록 증명서 및 선박재활용 준비 증명서 양식에 IMO ID번호, IMO 등록 선주번호, 회사 번호를 포함할 것을 결정함
- 선박 재활용 준비 증서는 유해물질 목록 증서를 대신할 수 없으며 최대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나, 주관청 및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에 의해 연장이 가능함(재활용 설비로의 단일 항해의 경우)
- 본회의 지시에 따라, 작업반은 “Visual/Sampling Check Plan”의 준비를 위한 Reg. 5의 개정안 작성하여 협약 초안에 반영하기로 함
 - IACS가 제안한 Appendix 2의 유해물질 목록 “Threshold value(경계 기준치) 및 면제”에 대하여는 협약 초안의 반영에 합의하지 못하고 관련 지침서에 반영하기로 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미국의 주장한 Appendix 5(선박재활용 시설 인가 양식)의 간소화는 거의 수용이 되었으나, 위해 물질표에 대해서는 MEPC 58에서 검토하기로 함

□ 기타사항

- Greenpeace와 FOEI가 주장한 저위해 물질 대체 원칙에 대한 제안은 이미 협약 초안의 Reg.6과 7에 포함되므로 거절되었으며, 선박재활용 기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에 보다 상세한 제안을 제출하기로 결정됨
- 작업반은 MEPC 56차에서 개발되었던, 협약 작업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개정하였음
 - 통신 작업반 (2008. 4~8)
 - 100차 이사회 (2008. 6)
 - 4차 중간회기 작업반 (2008.9.30~10.03)
 - MEPC 58 [DG] (2008.10.06~10.10)
 - 외교 회의 (2009.05.11~05.15, 홍콩)
 - MEPC 59 (2009년 1월)

의제 4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WG 1)

□ MARPOL 부속서 6 및 NOx 기술코드 관련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1997년 MARPOL 97 PROTOCOL 채택 당시 5년 단위로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강화기준을 검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MEPC 53차 (2005년 7월)에서 MARPOL Annex VI 및 NOx 코드를 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MEPC 53차 이래 진행되어 온 MARPOL 부속서 6 및 NOx 코드를 MEPC 58차(2008년 10월)에 채택할 목적으로 금번 회기에 승인함

□ 선박재활용의 위임 적합확인서에 대한 사항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현행 초안의 Appendix 5는 불분명한 용어를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현존 디젤엔진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기준의 소급 적용 범위와 기술적인 이행방법에 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었음
- BLG 12차에서 현존 디젤엔진에 대한 소급 적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마셜아일랜드, ICS(국제선주협회) 등은 현존 디젤엔진을 소급적용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
- 상당수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EPC 57/4/33(독일 및 일본 제출)로 제시된 현존 엔진의 소급적용 범위 제안에 대하여 대다수 국가가 지지함에 따라 1990년부터 1999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탑재된 “출력 5000 kW 및 실린더 용적 90 리터” 이상의 엔진에 적용하기로 결정됨
- 기술적인 이행 방안 관련하여, BLG 12차 까지 Option 1(시스템적인 접근)과 Option 2(Kit 사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기술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잠재적인 다양성을 감안하여 동 작업반은 두가지 Option을 동시에 수용함
- 따라서, 규제 적용대상 현존 디젤엔진의 이행 방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 주관청으로부터 “승인된 방법(Approved method)”이 IMO에 보고되어야 함
 - 승인된 방법이 IMO에 보고되어 회람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 검사 이내에 선상에 탑재되어 승인받아야 함
- 승인된 방법에 따른 엔진의 일부 시스템변경이나 부품 교체시 과잉 청구 방지를 위하여 청구서 산정식을 작성하였으나, 그리스나 ICS는 다음 회기에 충분히 더 검토할 것을 제의함
- 신조선을 위한 NOx Tier II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 2011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탑재된 디젤엔진부터 적용 (현행 기준으로부터 약 20 % 강화된 기준)
 - 분당회전수(rpm) 130 미만인 경우 14.4 g/kWh
 - 분당회전수 13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44 * n(-0.23)g/kWh$
 - 분당회전수 2000 이상인 경우 7.7g/kWh
- 신조선을 위한 NOx Tier III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탑재된 디젤엔진부터 적용됨 (현행 기준으로부터 80 % 강화된 기준)
 - 분당회전수(rpm) 130 미만인 경우 3.4 g/kWh
 - 분당회전수 13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9 * n(-0.2) g/kWh$
 - 분당회전수 2000 이상인 경우 2.0 g/kWh
- 황산화물(SOx) 및 입자상물질(PM)에 대한 강화기준 설정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됨
- 세계적인 강화 기준
 - 2012년 1월 1일 전까지 4.5%/m
 -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3.5%/m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0.5%/m. 단, 2018년에 재검토하여 이 기준의 시행이 불가하다고 결정되면 2025년부터 동 기준을 적용
- 황산화물 배출통제지역(SECA) 기준
 - 2010년 3월 1일 전까지 1.5%/m
 - 2010년 3월 1일 이후부터 1.0%/m
 -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0.1%/m
- 연료유품질 사양의 개발 관련하여, 해상 연료유에 대한 공기품질과 안전 관련 사항을 국제 표준화기구(ISO) 기준에 포함시켜주도록 ISO에 요청하기로 함

- NO_x 코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ISO 기준(2005년 판)을 반영하여 NO_x 코드를 전면 개정함
 - NO_x 선상검증 기준 중의 하나인 직접계측 및 모니터링 기준에 대한 지침서를 NO_x 코드에 포함시킴
 - 가변피치프로펠러가 연결된 엔진의 경우, 운전 방법에 관계없이 E2 시험사이클 기준 적용

- 예상되는 CO₂ 지수를 위한 시험모드의 사용
- 3) 육상전력의 사용
- 4) 풍력의 사용
- 5) CO₂ 지수의 자발적/강제적인 자료의 제출
- 6) 선박에서 사용되는 냉매의 누설에 대한 엄격한 금지
- 7) 선속의 감소
- 8) 선박의 효과적인 운항통제, 선단관리, 화물취급과 에너지의 개선
- 9)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GHG의 평가에 있어서 Soot와 NO 고려
- 10) 선박용 연료에 특별세 부과 및 신용구입을 위한 기금의 조성
- 11) 경제분야와 정부사이의 자발적인 위원회 설립

□ GHG 관련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총회 결의문 A.963(23)에서 총회는 MEPC가 온실가스 배출의 제한 및 감소에 관한 미래 IMO 규정의 정립에 착수할 것을 촉구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GHG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Short-term measures(11 항목)와 Longer-term measures(7항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였으며, 2008년 6월 23일에 개최될 Oslo 모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통신작업반(CG)을 구성함
- 통신작업반(CG)의 해야 할 위임 사항을 Annex 2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위의 장·단기적 검토사항 및 Idea를 5월 30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함
-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GHG 배출물에 대한 W/G의 위임사항 및 회의결과
 - MEPC 58차 이전에 현실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목적으로 GHG 배출물을 줄이기 위한 Short-term measures에 초점을 맞추어서 GHG 관련 중간통신작업반(BLG 12)의 추천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하였으며, Annex 1과 같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Stakeholder를 지정하였음
 - 1) 연료 소모량의 개선
 - 2) 효율적인 선체설계 및 관리/신조선박의

- 성취가 가능한 GHG 저감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GHG 배출물을 줄이기 위한 Longer-term measures에 대한 중간통신작업반(BLG 12) 보고서에서 정의된 추천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였으며, Annex 1과 같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Stakeholder를 지정하였음
 - 1) 선박설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최적화된 선형, 프로펠러 및 엔진 등)
 - 2) 대체연료의 사용
 - 3) 신조 선박에 대한 강제적인 CO₂ 설계 지수
 - 4) CO₂ 지수의 국제적인 증명체계
 - 5) 하나의 통일된 CO₂ 지수의 사용과 따르지 않을시 벌칙금의 부과
 - 6) 배출가스 거래제
 - 7) 항만시설의 사용시 강제적인 CO₂ 관련 세금의 징수
- MEPC 58차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본으로 한 CO₂ 배출물 기준(Baseline)에 대한 방법의 개발과 신조선박에 대한 CO₂ 설

계지수의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최종 결정을 Oslo 회의 및 MEPC 58차로 이관함
 - GHG 작업계획(MEPC 55/23, annex 9)을 기본으로 해서, 이 계획의 1, 2항이 성취될 수 있도록, Oslo, Norway(2008. 6. 23~27)에서 개최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GHG에 대한 W/G의 중간모임을 위한 위임사항을 개발함(Annex 3 참조)

3. 기타 사항

- 신조 선박에 대한 CO₂ 설계지수의 필수 (Mandatory) 개발 및 환경 규제에 대한 적용 국가를 예외 없이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베네주엘라 등에서 반대가 심하여 2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음

- 부속서 1의 유사한 조항과 연계하여 규칙에 포함 되어야 함
- 화물잔류물의 배출문제는 특별히 고려될 것
- MARPOL에서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산적액체 문제에 대하여, 부속서 5는 MARPOL의 다른 부속서에 수용될 수 없는 선내 쓰레기를 위한 투기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됨
- 작업계획을 MEPC 58차에서 59차로 연기하고 2009년 7월의 MEPC 59차에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속서 5의 재검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함
- 통신 작업반의 재설립에 동의하며 부속서 5 및 관련 지침의 개정안을 개발하여 MEPC 58차에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59차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제 5	MARPOL 73/78 협약 및 관련 규정의 해석과 개정
------	---------------------------------

□ MARPOL 부속서 5의 재검토

(관련문서 : MEPC 57/5/1, MEPC 57/10/2, MEPC 57/INF.10)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5.1 부속서 5의 재검토를 위한 통신작업반이 MEPC 56차에서 결성되어 부속서 5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재검토하고 MEPC 57차에 보고하도록 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음
 - 이코너마이저 또는 보일러로부터 나오는 수트(검댕)의 처분은 부속서 1 또는 5의 폐기물과 같이 취급되어야 함
 - 지침에 포함된 정의는 부속서 5의 규칙에 포함되어야 함
 - 쓰레기의 해양으로 투기금지 는 MARPOL

□ 동등한 건조단계에 대한 제안

(관련문서 : MEPC 57/5)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IACS가 이행하는 “IACS 통일해석 MPC 90 및 MPC 91”을 제공한 것임
- 규칙의 적용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MARPOL 부속서 1 및 4에서는 선박의 인도 관련 정의에 “동등한 건조단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음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동등한 건조단계에 대한 다음의 용어의 정의를 MARPOL 부속서 1 및 부속서 4에 추가하기로 함 : “동등한 건조단계”라 함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말한다.
 - 당해 선박이 건조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서, 그리고
 - 그 선박의 조립이 적어도 전구조물의 견적 중량의 1% 또는 50톤 중에서 적은 쪽의 양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펌프룸 바닥보호

(관련문서 : MEPC 57/5/3)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MARPOL 부속서 I Reg.22에 적용되는 IACS 통일해석 MPC 85에 대한 최근 개정용 제공하는 것임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부속서 1의 제22규칙의 펌프룸 보호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빌지웰의 바닥과 선체 외판과의 거리는 시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baseline간의 거리로 문구를 수정, 선저 만곡부 상부에 펌프룸이 위치할 경우 최소요건 높이 상방에 바닥이 위치하는 부분은 이중저로 보호할 필요가 없도록 명확히 한 것에 대하여 승인함

옵션선박의 계약일 적용

(관련문서 : MEPC 57/5/2)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MARPOL 부속서 I Reg.22에 적용되는 IACS 통일해석 MPC 85에 대한 최근 개정용 제공하는 것임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옵션 선박의 계약이 그 시리즈선을 건조하기로 서명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실행된다면 그 옵션 선박은 시리즈선과 동일한 부분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에 대한 MSC/ MEPC Circular 발행 요청에 대하여, MSC 84차의 동의를 전제로 승인함

의제 6	OPRC 협약, OPRC-HNS 의정서 및 관련 협약 결의서 이행
------	--------------------------------------

제7차 OPRC-HNC 기술그룹 보고서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2008. 3. 25~28 영국에서 개최된 제7차

OPRC-HNC 기술그룹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의 대응에 대한 매뉴얼의 최종본을 MEPC 58차에 제출하기로 함
- HNS 위원회가 지시한 화학물로부터의 오염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함

분산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 관련

(관련문서 : MEPC 57/6/1)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지난 15년간 분산제 사용에 대한 비약적 발전 있었으며 최신의 정보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분산제에 대한 IMO 가이드라인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개정이 필요함을 미국이 제안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MEPC 58에 제출하기로 함

의제 7	특별해역과 특별 민감해역의 식별 및 보호
------	------------------------

PSSA 관련

(관련문서 : MEPC 57/7, MEPC 57/7/1, MEPC 57/7/2)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Papahanaumokuakea 해역의 특별민감해역 지정 관련
 - 미국의 제안(NAV 53/3/4)에 따라, NAV 53은 “북서 하와이 섬에서 피하도록 권고되는 현행 6개 지역”을 개정하여 명칭을 “Papahanaumokuakea Marine National Monument PSSA”로 바꾸었음
 - MSC 83은 Papahanaumokuakea 해역을

- 통항하는 선박 및 이 해역을 통하여 미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새로운 항행 조건과 새로운 선박보고시스템에 대한 강제 적용을 Res.MSC.248(83)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는 2008. 5. 1부터 이행 되어야 함을 결정하였음
- MEPC 57/7과 MEPC 57/7/1에 Papahānaumokuākea 해역을 특별민감해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
 - MARPOL 부속서 V에 의한 지중해 지역의 특별해역 관련
 - MARPOL 부속서 V에 의하면 지중해는 특별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중해 내의 관련 항만들이 여지껏 적절한 수용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MARPOL 부속서 V에 따른 특별해역에서의 배출 제한요건이 발효되지 아니하였음
 - 이제, 지중해 내 항만들이 수용시설을 갖추었으니 동 위원회로 하여금 MARPOL 부속서 V에 따라 특별해역으로 지정된 지중해의 유효한 적용일을 정하여 줄 것을 MEPC 57/7/2에 요청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Papahānaumokuākea 해역의 특별민감해역 지정 관련
 - 위원회는 MEPC 57/7/1의 PSSA 목록에 의해 Papahānaumokuākea 해역을 특별민감해역(PSSA)으로 지정함에 동의함
- MARPOL 부속서 5에 의한 지중해 지역의 특별해역 관련
 - 특별해역에서의 배출기준은 2009. 5. 1부터 적용
 - MARPOL 부속서 5 Reg.5(4)(b) 일반사항은 2008. 4. 30전까지 Circ.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의제 8 | 불충분한 수용 시설

- 제출 문서 없음

의제 9 | 전문 위원회 보고서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위원회는 NAV 53차가 2007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었음을 주지하며 “특수지역 및 특별 민감 해역 보호”에 대한 내용이 의제 72bis 관련 APMs에 규정 관련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추가 요청이 없었음을 확인함
- BLG 12 결정사항 관련 선박평형수 의제와 대기 오염장지 의제가 각각 2번과 4번으로 정해짐을 주지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MEPC 58차에도 계속될 것임을 주지함
- 위원회는 DSC.1/Circ.54의 자발적인 적용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임을 확인함
- DSC 12 회의의 협의에 따라, 위원회는 DSC 12에서 개정된 IMDG 3장에 명기된 “적절한 선사명”이 “정확한 기술명”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확인함
- DSC 12가 해양오염물(Marine Pollutant) 규정에 대한 개정 정보 관련 DSC.1/Circ.54를 승인하였으며 이는 IMDG Code 34-08 개정을 통해 유효해질 것임을 인증함
- 위원회는 IMDG Code(33-06개정)의 2.10장 (Marine Pollutant)의 적용 관련 지침에 대한 DSC.1/55를 승인하였음

의제 10 | IMO 타기구의 결정사항

타기구 결정사항 관련

- MEPC와 관련된 MSC 83의 결과(MEPC 57/10), 제25차 총회 결과(MEPC 57/10/1), 런던협약/프로토콜 결과(MEPC 57/10/2) 및 GESAMP 활동보고서(MEPC 57/10/3)을 위원회에 보고함

- A.25의 새로운 의제 제출에 대한 문서형식 소개함

의제 11 **협약 이행상태**

협약 이행상태

(관련문서 : MEPC 57/11)

협 약	발효요건	비준현황	적용일
MARPOL 73/78 개정문	15개국 세계톤수 50%	47개국 세계톤수 74%	2007. 12. 11
1990 OPRC 협약	15개국	90개국 세계톤수 65%	1995. 5. 13
2000 OPRC-HNS 프로토콜	15개국	18개국 세계톤수 17%	2007. 6. 14
2001 AFS 협약	25개국 세계톤수 25%	26개국 세계톤수 38%	2008. 9. 17
2004 BWM 협약	30개국 세계톤수 35%	11개국 세계톤수 4%	-

의제 12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AFS 협약 관련

(관련문서 : MEPC 57/12)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2001년 채택되었던 국제방오시스템 협약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2008년 9월 17일 발효 예정임
- AFS/CONF/RD/2에 언급된 IMO 법률 사무소의 조언에 의하면, AFS 협약이 2003년 1월 1일 후에 발효될 경우, 유효한 적용에 따른 요건 시행일은 협약의 발효일자로 연기된다고 밝힌 바 있음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IMO 사무국은 2003년 1월 1일 및 2008년 1월 1일의 유효한 적용일에 따른 요건 시행일이 이 협약의 발효일자(2008년 9월 17일)로 대체됨을 알림

의제 13 **MARPOL 73/78 및 관련 규정의 이행 증진**

세계통합선박정보시스템 관련

-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동 위원회는 세계통합선박정보시스템(GISIS)의 모듈 중의 하나인 기름오염방지설비(PPE)의 승인 현황이 2008년 2월 1일부터 완전히 제공됨을 알림

의제 14 **UNCED와 WSSD 후속조치**

WSSD에 의한 IMO 이행요구 관련

(관련문서 : MEPC 57/14)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의제 문서는 MEPC 52차 이후 제출되지 않아 MEPC 56차에서 삭제 논의가 있었고 이번 57차 까지 삭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위원회 지침서에는 연속으로 2차에 걸쳐서 의제가 제출되지 않으면 삭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 되어 있음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각국 대표단의 계속된 논의 결과, 본 의제를 삭제하기로 합의함

의제 15 **기술협력프로그램**

기술 협력 프로그램 활동상황 보고 관련

(관련문서 : MEPC 57/15)

- 위원회는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재상기하고, 통합된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의 공헌을 언급하며 MEPC 56차 기간 글로벌 환경 시설에 대한 IMO의 제안의 성공적인 결론에 대해 상기함
- GloBallast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바바도스, 크로아티아, 이집트, 이란, 태국, 터키, 베네주엘라 등에서 기구에 감사를 전함

의제 16 인적요소의 역할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MSC와 MEPC가 인적요소에 대한 공동작업반 구성을 합의하였고 MSC와 MEPC가 번갈아가며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소집해야 함을 요청함
 - MSC 83차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봄
 - 인적요소를 착수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실행 방안의 수정
 - 회사의 ISM Code의 실제 적용을 위한 지침서(MSC-MEPC.7/Circ.5)
 - ISM의 규정하에 지정된 사람의 역할을 맡기 위한 평가, 훈련 및 실습에 관한 지침서((MSC-MEPC.7/Circ.6)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MEPC 의장에 의해 명확화를 요청받은 아래 사항에 대해 MSC 83차에서 합의됨
 - MSC/MEPC 인적요소 공동 작업반의 지속적인 활동
 - 현재시점에서 선원의 교육에 관한 ILO/ IMO 공동작업반의 설립 강제화는 STW Sub-Committee에서 착수하였으므로 필요 없음
 - ILO/IMO 공동작업반 설립 제안은 적절하지 않음
3. 기타 사항
 - 인적요소에 관한 MSC/MEPC 공동작업반 차기 회의가 MSC 84차와 연계하여 2008년 5월 개최 예정임. 결과는 MEPC 58차에 제출될 것임

의제 17 공식안전성평가(FSA)

- 통신작업반 보고 관련**
(관련문서 : MEPC 57/17)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MEPC 56차에서 환경위해도 평가기준(MEPC 55/18에 부속서 3)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MEPC 56/18/1)한 그리스의 의견에 동의
 - 위원회는 환경위해도 평가기준의 검토를 위한 정보와 조사가 부족하다 판단하고 이를 위한 통신작업반을 그리스를 중심으로 구성함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환경위해도 평가를 Oil 오염에만 국한시키지 말자는 의견 있었으나, 통신작업반은 모든 선박으로부터의 Oil 오염(병커 포함)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결정함

의제 18 위원회 및 부속기구 작업계획서

- 선박과 고래류의 충돌 최소화 관련**
(관련문서 : MEPC 57/18/2)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고속 및 대형화 선박의 개발 그리고 복잡한 선박 통항량으로 고래류와 충돌하는 선박과 연관된 위험성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다음과 지역에서 고래와 충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호주, 벨지움, 이태리, IUCN, IFAW 및 UNEP/CMS/ASCOBANS 합동 사무국에서 제안
 - 북아메리카: 시각 및 음향감시장치를 사용한 고래출현감지를 위한 감시장치가 개발되었으며, 두 개의 IMO 선박보고제도가 채택됨
 - 북아시아: 한일간의 추시마해협 근방에서 고속여객선과 고래와의 충돌이 자주 발생함
 - 유럽 및 북아프리카: 테네리페 및 그란카나리아간 운항하는 고속선이 고래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고, 지프랄타해협에서 충돌사고가 발생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고래류와의 충돌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동 의제를 IMO 지침서로 개발할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몇몇 대표단은 고래류와의 충돌 사고에 대한 통계 및 정보의 부족으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 많은 대표국들이 각 회원국에서 선박과 고래류의 충돌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으로 MEPC 58의 새로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지지하여 의장은 이에 동의함

의제 19 **위원회 지침서의 적용**

의장회의 보고서 관련

(관련문서 : MEPC 57/19, MEPC 57/19/1)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의장회의가 2007. 10. 8 개최되고 그 결과를 보고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IMO 문서 대한 새로운 형태에 대해 바하마의 이견(업무량 증가 등)과 몇몇 대표국의 동의로 의장은 차기 의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의제 20 **기타 사항**

소형선박의 해양환경 영향 관련

(관련문서 : MEPC 57/20)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FOEI는 소형선박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위한 옵션을 제안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많은 대표국들이 소형선박의 해양오염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함

- 위원회는 REMEPC 주관으로 확대된 작업을 수행할 것에 동의하고 바르셀로나 협약과 연계 검토를 요청함

IV. 아국 활동 사항

평형수내 유기물질

- 검토반 회의시 미국,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대표단 등과 의제에 대한 해석 사항 논의 및 지침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아국 제조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함
 - 미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대표단 및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사와 정보 교환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협조 관계 유지를 제안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각 국 및 단체 대표단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선박 평형수 협약 관련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처리장치 개발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전달함
- 4월 2일 GESAMP(해양환경 보호 관련 과학자 전문가 그룹)의 활동상황 및 현황 관련 프리젠테이션 참석
 - GESAMP는 IMO을 포함한 8개 UN산하 기관의 연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해당 기관과 스웨덴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많은 젊은 과학자들의 참여를 당부함

선박재활용

- 전세계 재활용 시설의 제한된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협약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비당사국의 재활용 시설의 사용이 필요함을 주장
 - 노르웨이(Mr. koefoed), 미국(Dr. Richard everett) 등의 관계자와 협약의 초안 및 비당사국에 대해 아국의 입장을 전달하였음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

- 현존 디젤엔진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기준
 - 아국은 BLG 12(2차 중간회기 포함)에서 적정한

- 크기와 1990년 이후 제작된 현존엔진에 대해 서만 소급적용할 것을 표명한 바 있음
- 이번 회기에서 적용대상 엔진의 구체적인 결정시 MEPC 57/4/33의 제안과 같이 “출력 5000kW 및 실린더 용적 90리터 이상의 현존 엔진”에 대해 적용할 것을 지지하였음
- 기술적인 이행방안 관련하여, 덴마크(Option 1 제안) 및 미국(Option 2 제안) 대표와 협의하였으며 사실상 NOx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의 교체는 일부 시스템 변경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Option 1과 2를 적절히 접목하여 “주관청으로부터 승인된 방법(Approved method)”으로 정하는 데에 합의함
- 신조선을 위한 NOx Tier III 기준
 - NOx Tier III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SCR (촉매환원반응장치)의 승인과 관련하여 아국은 SCR의 별개 승인 및 엔진과 SCR의 일체 승인 관련 지침서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여 덴마크, 일본 대표와 협의하였으며 다음 회기에 “후처리장치가 장착된 Tier III 기준의 승인을 위한 지침서 초안”을 덴마크, 일본과 공동 개발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대기오염방지 작업반 의장에게 문서 제출 의사를 표명함
- 황산화물(SOx) 및 입상물질(PM)에 대한 강화기준
 - 세계적인 황산화물(SOx) 규제기준 강화 관련하여 아국의 정제기술력, 정제시설현황과 향후 시설확충계획을 고려하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의견과 공동 연계하여 2012년부터 3.5%로 설정할 것을 표명함
 - 황산화물 배출통제지역(SECA)의 규제기준 강화 관련하여 아국은 2010년 3월 1일 이후부터 1.0%/m 및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0.1%/m로 지지하였으며 커다란 논쟁은 거치지 않고 결정됨

- 온실가스(GHG) 배출제한 관련
 - 아국에서는 GHG 배출물의 주범인 CO₂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Plenary에서 발표했으며, 특히 CO₂ 지수개발에 대한 연구 내용을 MEPC 58차에 제출하겠다고 발언함
 - W/G에서는 일본에서 제출한 문서인 MEPC 57/4/11 및 12(실제 운전조건에서 CO₂ 지수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함

V. 향후 조치사항

평형수내 유기물질

- 개정 지침서(G9) 관련 업·단체 통보
- BWWG 최신 심사방법론(Methodology) 관련업·단체 통보

선박재활용

- 전문가 그룹 구성 및 협약 초안 검토후 MEPC 58차 이전까지 아국(안) 마련
- ※ 2009. 5 외교회의 개최 및 협약 채택 예정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

- NOx, SOx 배출 제한기준 결정 사항 관련 업·단체 통보
 - 후처리 장치 장착 Tier III 배출기준 승인을 위한 지침서 공동 개발(일본, 덴마크)
- GHG 저감 후속조치
 - 국제워크샵(5.29-30, 일본) 및 중간 작업반 회의 참석(6.23-37, 노르웨이)
 - CO₂ 지수개발 의제 개발 및 차기회의 제출

MARPOL 특별해역 설정 등

- 특별민감해역 설정사항 관련 업·단체 통보
 - 하와이 인근 “Papahānaumokuākea 국립공원”(2008. 5. 1, UTC 0000 시행)
-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5 특별해역 추가 사항 관련 업·체 통보
 - 지중해(2009. 5. 1 시행)